

전주지방법원 2024. 8. 26 선고 2023나15281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4. 8. 26 선고 2023나15281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5. 31 선고 2022가소316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건

담당변호사 김경희, 이동훈

피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변론종결 2024. 7. 15.

판결선고 2024. 8. 26.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5. 31. 선고 2022가소316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78,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 및 쌍방의 주장을 다시 살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이 법원”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쪽 제5행의 “상당하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개별 합의를 거쳐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기준이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등 참조), 을 제8 내지 10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위탁계약 내용 중 특별히 ‘이 사건 면책기준’ 조항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 제10쪽 아래에서부터 제4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면책기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면책조항’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설령 이 사건 면책기준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제1심판결 제11쪽 각주 1 내용 중 “제1회 변론기일”을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이라고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규, 판사 천무환, 판사 구나영